

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6577
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. 27.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교육감
(행정관리과)

1. 개정이유

교육부에서 「2023년도 시·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」에 따라 배정한 국가정책수요 인력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: 2,886명 → 2,899명(13명 증)

- (안 제2조제2호)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: 2,620명 → 2,631명(11명 증)

※ 교육전문직원 제외

- (안 제2조제3호) 교육전문직원의 정원: 266명 → 268명(2명 증)

나. 증원 내역

- 2023년도 국가정책수요 인력 증원: 13명(일반직 11명, 교육전문직원 2명)

3. 개정안: 붙임

4. 비용추계서: 붙임

5. 참고 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(안 별표 3): 붙임
- 나. 입법예고: 2023. 1. 10. ~ 1. 16. (의견 없음)
- 다. 관계법령: 붙임
- 라. 기타사항
 -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 -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사항 없음
 - 규제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,886명”을 “2,899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2,620명”을 “2,631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266명”을 “268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(안 제4조 관련)

직종별	단위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	교육지원청	공립 각급학교
총 계		2,899				
정 무 직	정무직 계	1	1			
	교육감	1	1			
일 반 직	일반직 계	2,620				
	3급	7	7			
	4급	23	20	3		
	5급 이하	2,588				
	전문경력관	2				
연 구 직	연구직 계	7				
	연구사	7				
별 정 직	별정직 계	3				
	5급 상당 이하	3				
특 정 직	특정직 계	268				
	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0	23	7		
	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38			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2,886명</u> 으로 하고,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2,899명</u> ----- -----.		
1. 삭 제		2. ----- -----		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 : <u>2,620명</u>		----- <u>2,631명</u>		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: <u>266명</u>		3. ----- <u>268명</u>		

[별표 3]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

직종별	단위기관별		총계	본청 (삭)관 포함)	교육 지원청	공립 각급 학교
	직급별					
총 계			2,886			
정무직	정무직 계		1	1		
	교육감		1	1		
일반직	일반직 계		2,609			
	3급		7	7		
	4급		23	20	3	
	5급 이하		<u>2,577</u>			
	전문경력관		2			
연구직	연구직 계		7			
	연구사		7			
별정직	별정직 계		3			
	5급 상당 이하		3			
특정직	특정직 계		266			
	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원		30	23	7	
	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장학사교육연구사		<u>236</u>			

[별표 3]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

직종별	단위기관별		총계	본청 (삭)관 포함)	교육 지원청	공립 각급 학교
	직급별					
총 계			2,899			
정무직	정무직 계		1	1		
	교육감		1	1		
일반직	일반직 계		2,620			
	3급		7	7		
	4급		23	20	3	
	5급 이하		<u>2,588</u>			
	전문경력관		2			
연구직	연구직 계		7			
	연구사		7			
별정직	별정직 계		3			
	5급 상당 이하		3			
특정직	특정직 계		268			
	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원		30	23	7	
	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장학사교육연구사		<u>238</u>			

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수반요인

- 지방공무원 13명(일반직 11명, 특정직 2명) 인건비
-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(안 제2조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교육부 2023년 총액인건비 통보 단가로 산정하되,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인 1.7%를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적용
[1인당 단가 : 일반직 78,772천원, 특정직 123,237천원]
- 비용추계기간 : 2023.3.1. ~ 2027.12.31.(4년 10개월)
- 2023년도 인건비 소요액은 3월 ~ 12월 간(10개월) 반영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천원)

구분 \ 연도	2023	2024	2025	2026	2027	합계
지방공무원인건비	927,472	1,131,886	1,151,128	1,170,698	1,190,600	5,571,784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천원)

구분 \ 연도	2023	2024	2025	2026	2027	합계
중앙정부이전수입	927,472	1,131,886	1,151,128	1,170,698	1,190,600	5,571,784

5. 부대의견 : 해당 없음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'23년도: 78,772천원×11명(일반직)×10/12월 + 123,237천원×2명(특정직)×10/12월 = 927,472천원
- '24년도: 80,111천원×11명(일반직) + 125,332천원×2명(특정직) = 1,131,886천원
- '25년도: 81,473천원×11명(일반직) + 127,463천원×2명(특정직) = 1,151,128천원
- '26년도: 82,858천원×11명(일반직) + 129,630천원×2명(특정직) = 1,170,698천원
- '27년도: 84,267천원×11명(일반직) + 131,833천원×2명(특정직) = 1,190,600천원

관 계 법 령

▣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4조(총액인건비제 운영)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,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(정원 책정의 일반기준)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(이하 "단위기관"이라 한다)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1.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·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.
2. 업무의 성질·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
2. 본청(직속기관을 포함한다)
3. 교육지원청(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
4. 공립의 각급 학교

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1. 5급 이하 직급별 정원
2.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
3.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④ 직렬별 정원(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▣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제4조(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) 본청,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직렬별 정원) 본청,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 학교 등 정원 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▣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

제2조(직급·직렬별 정원)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·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.